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건강보험 부과 제도의 이해



Contents

- 01. 건강보험의 개요
- 02.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목적 및 추진경과
- 03.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 04.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 보험재정

재정 구성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월 납부

(정부지원)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6%)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는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매월 1일자 자격 기준)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

직장가입자 | 해당 사업장 소득(보수월액) 및 보수 외 소득(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 **세대 단위**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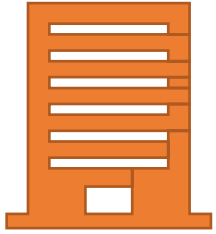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보험료가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로 부과

건강보험 개요



■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text{월급} \times 7.09\% = \text{건강보험료}$$

보수월액 '24년 기준 보험료율

딱! 반으로 나누어
개인 부담 직장 부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부과

$$\begin{matrix} \text{2,000 만 원} & \text{초과 소득} & \div 12\text{개월} & \times & \text{소득평가율*} & \times & 7.09\% & = & \text{건강보험료} \end{matrix}$$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begin{matrix} \text{소득월액} & + & \text{재산보험료부과점수} \\ \times & & \times \\ 7.09\%('24\text{년}) & & 208.4\text{원}('24\text{년}) \end{matrix} = \text{건강보험료}$$

* (소득평가율) 근로 및 연금 소득은 50%, 금융·사업·기타 소득은 100%(지역 부과 적용 소득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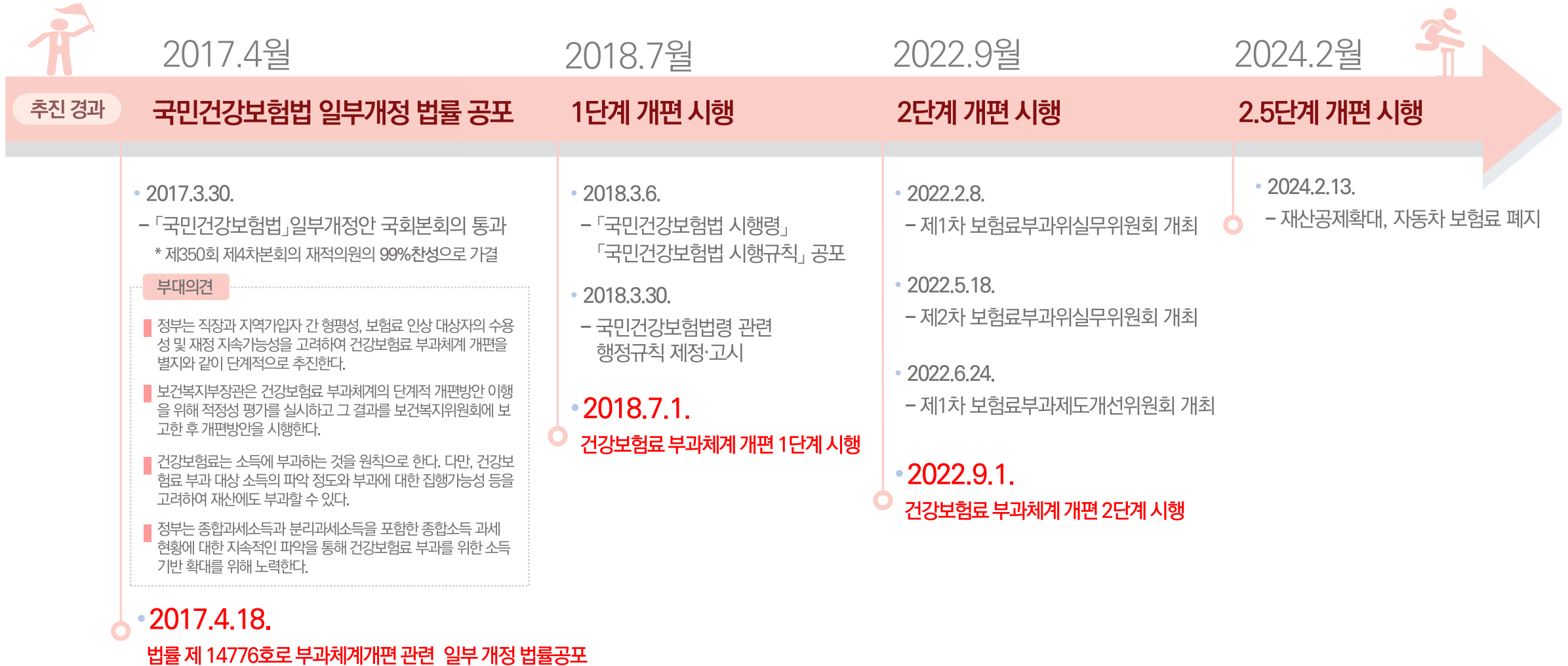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목적

“ 소득중심의 단계적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

- 01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위한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
- 02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
- 03 적정기여·적정부담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강화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경과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및 보험료 부담 가중

01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걱정 부담 필요

02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03

2000년 이후
18년간
같은 기준 유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역진적인 소득 부과체계 논란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국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17년 4월})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계적**으로(1단계 '18.7월, 2단계 '22.9월) **개편**되었습니다.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및 보험료 부담 가중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적정 부담 필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가중

01

(형평성) 저소득(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을 근거로 부과함으로 소득이 동일해도 성별·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불합리한 사례 발생

(부담가중)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자동차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으로 한번 더 부과함에 따라 이중부과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17년기준)

성별 연령에 따른 형평성 논란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별 · 나이	남성 (점수)	20세미만~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1.4)	(4.8)		(5.7)	(6.6)			
	여성 (점수)	20세미만~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1.4)	(3.0)		(4.3)	(5.2)			
	재산(만원) (점수)		450 이하	450 초과~ 900 이하	9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3,000 이하			
			(1.8)	(3.6)	(5.4)	(7.2)	(9.0)	(10.9)	(12.7)
자동차(연간세액) (점수)		6만4천원이하	6만4천원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2만4천원이하	22만4천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55만원이하	55만원초과~ 66만원이하	66만원초과	
		(3.0)	(6.1)	(9.1)	(12.2)	(15.2)	(18.3)	(21.3)	

이중부과 등 부담 가중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및 보험료 부담 가중 문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적정 부담 필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02

직장가입자 보수는 소득정률제로 보험료를 부과하나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은 7,200만원 이하까지 보험료 미부과



(직장가입자)

연 보수 7,200만원

건강보험료 183,600원(가입자부담금) 부과
※ 1,443점(소득점수) X 179.6(보험료부과점수, '17년 기준)



(직장가입자)

이자소득 7,200만원

건강보험료 0원 부과

※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7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부과

“

동일한 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부과기준 차이가 발생

=> 직역 간 형평성 및 고소득 가입자의 적정 부담 제고 필요

”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및 보험료 부담 가중 문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적정 부담 필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03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 부담** ('17년 3,660원)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 미부과**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4,000만원
금융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 4,000만원

건강보험료 234,010원 부과

※ 1,303점(소득점수) X 179.6(보험료부과점수, '17년기준)



(피부양자)

연금소득 4,000만원
금융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 4,000만원

건강보험료 0원 부과

※ 소득요건 소득별 각각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발생

”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및 보험료 부담 가중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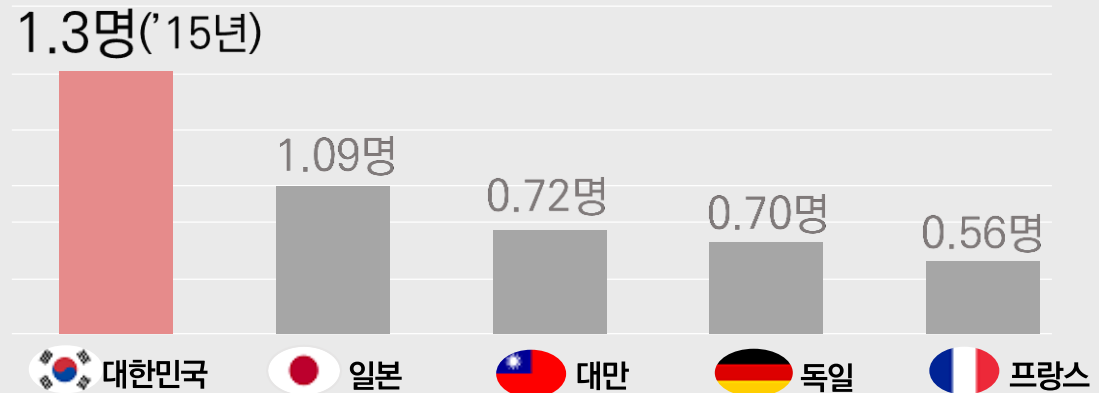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적정 부담 필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03

짧은 기간에 전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를 인정하여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음

〈 주요국의 피부양률 비교 (2011년) 〉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주요내용

개편 전 (~2018.7월)	1단계 개편(2018.7월~)
 지역가입자 취약계층 부담완화 - 저소득층 평가소득 보험료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 재산 보험료 부과 (토지, 주택, 건물, 전월세) - 자동차 보험료 부과 (자동차 종류, 사용연수, 배기량)	-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재산 공제제도 도입 (500~1200만원 차등 공제) - 소형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 고소득자 적정부담 - 보수 ×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 추가 보험료 (보수외소득 연 7200만원 초과 시)	- 보험료 상한 상향 조정 (소득등급표 확대를 통해 보험료 상한 78백→99백만원 조정)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 年 3,400만원으로 강화
 피부양자 형평성 개 선 ①금융, ②연금, ③근로+기타소득 각각 연 4천만원(최대 1억2천만원) 초과 - 재산 과표 9억원 초과 -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인정	- 소득요건 연 3,400만원 기준 강화 - 재산 요건 과표 5.4억원 초과 + 연 1,000만원 소득 초과로 기준 강화 - 형제, 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단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은 인정)



■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주요효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성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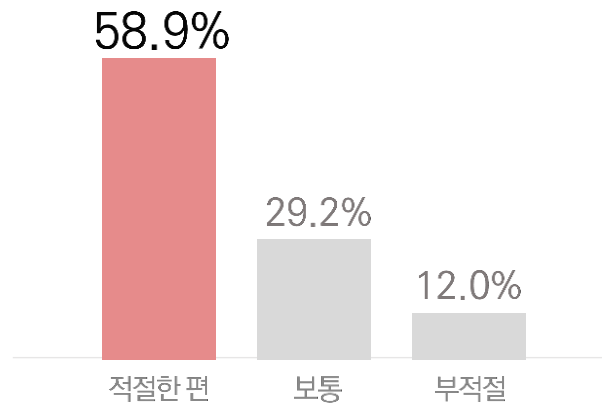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성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국민의견 수렴

전국민 17개 시도 만 19세~70세미만 성인남녀 3,000명 대상 58.9% 적절한 편

부과체계 1단계개편 만족도 및 개선점 전국민 17개 시도 국민 대상



참여현황: 전국민 17개 시도 만 19세~70세미만 성인남녀 3,000명 참여
 기간-방법 (1차): 2018.10.24. ~ 29., 전화면접 조사(2,000명)
 기간-방법 (2차): 2018.11.2. ~ 14., 온라인 및 대면조사(1,000명)
 내용(1차): 부과체계 개편 시행 인지도 및 홍보효과 17개 문항
 내용(2차): 부과체계 개편 시행 인지도 및 홍보효과 14개 문항

적절한 이유	
1위	고소득자 부과확대
2위	무임승차 개선
3위	최저보험료 도입

불적절한 이유	
1위	충분한 홍보 부족
2위	보험료 인상폭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배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18.7월)이후,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추진**을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수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 과거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재산기준 강화에 대한 현실화 요구 제기(부과실무위, '22.2.8), 국회 합의안(재산과표 5.4→3.6억원으로 강화)수정하여 피부양자 재산기준 현행유지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역진적인 소득 부과체계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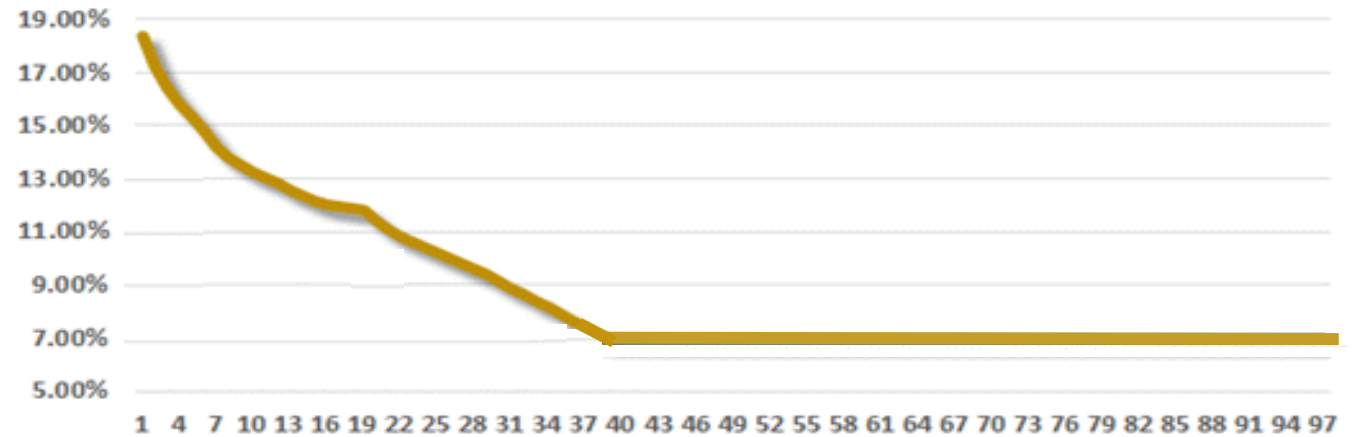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속적인 무임승차 논란

01

1단계 개편 이후 소득보험료 부과는 역진적인 등급별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이 오히려 소득대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1단계 개편 후, 지역가입자 소득 등급별 소득대비보험료율 〉



“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현상이 나타남
=> 소득 계층간 형평성 개선 필요 => 소득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역진적인 소득 부과체계 논란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속적인 무임승차 논란

02

재산, 자동차는 실제 생활 능력과 연관성이 낮은데도,
지역가입자는 여전히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보험료 비중 높음**

〈 지역보험료 내 소득부과 비중 〉



“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재산보험료 비중 낮출 필요**
=> **실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필요
”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역진적인 소득 부과체계 논란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속적인 무임승차 논란

02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에 종합소득을 100% 반영하나



(지역가입자)

이자소득 3,400만원

건강보험료 198,050원 부과

※ (3,400만원 / 12개월) × 건강보험료율(6.99%, '22년기준)



(직장가입자)

이자소득 3,400만원

건강보험료 0원 부과

※ 2,000만원 공제로 전액 미부과

“

동일한 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부과기준 차이가 발생

=> 직역 간 형평성 제고 필요

”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역진적인 소득 부과체계 논란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속적인 무임승차 논란

03

1단계 개편이후,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여전히 높음

〈피부양자 소득기준〉

구 분	피부양자 소득기준	
 한 국	개편전	4,000만원
	1단계 개편	3,400만원
	2단계 개편	2,000만원
 독 일	720만원 수준	
 일 본	1,278만원 수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

구 분	피부양률(19년 기준)
 한 국	1.3명 → 0.95명 (‘15년) (‘22년)
 독 일	0.29명
 일 본	0.68명
 대 만	0.49명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역진적인 소득 부과체계 논란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속적인 무임승차 논란

03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 부담** ('24년 19,780원)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 미 부과**



(지역가입자)

이자소득 3,400만원

■ 건강보험료 173,400원 부과

※ (3,400만원 / 12개월) X 건강보험료율(6.12%, '17년기준)



(피부양자)

이자소득 3,400만원

■ 건강보험료 0원 부과

※ 피부양자 소득 인정요건 34백만원(1단계 개편 이후)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발생

”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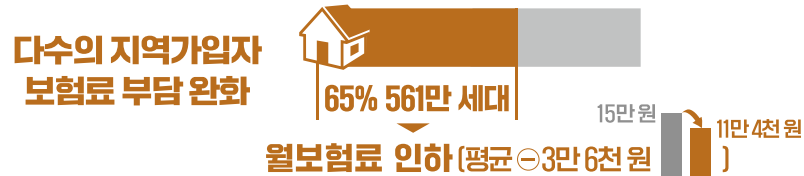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효과

재산부담은 줄어 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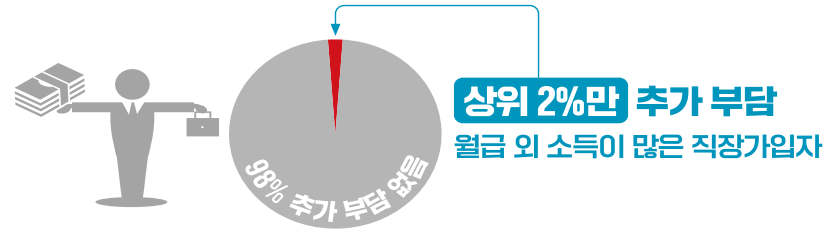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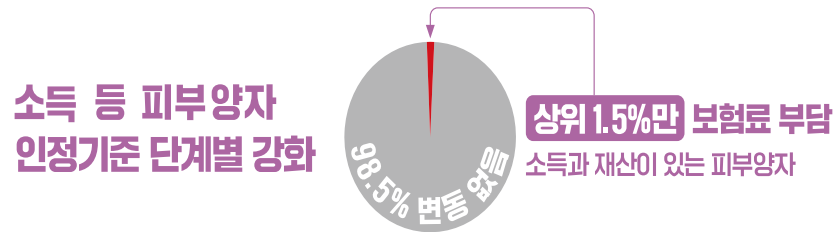
직장가입자

보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집니다.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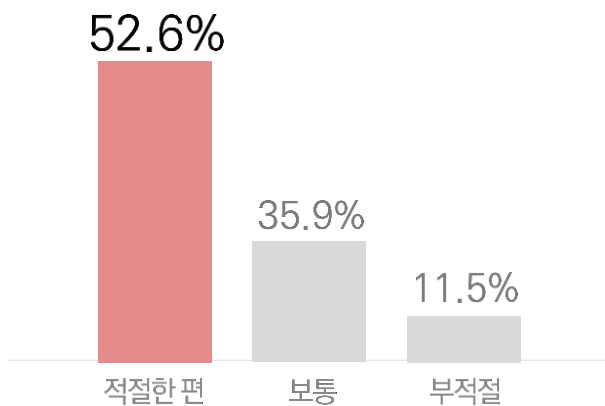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성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국민의견 수렴

전국민 17개 시도 만 19세~70세미만 성인남녀 2,000명 대상 52.6% 적절한 편

부과체계 2단계개편 만족도 및 개선점 전국민 17개 시도 국민 대상



참여현황: 전국민 17개 시도 만 19세~70세미만 성인남녀 2,000명 참여
기간: 2022년 10월 12일(수) ~ 11월 20일(일)
조사기관: (주)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적절한 이유	
1위	동일 부과방식 개선
2위	재산 보험료 완화
3위	무임승차 개선

불적절한 이유	
1위	무임승차 문제
2위	보험료 인상폭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중요한 항목

(n=2,000)



현재부과 중인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24.1%**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20.0%**

피부양자 제도 정비 등을 통한 납부 가능한 대상자수 확대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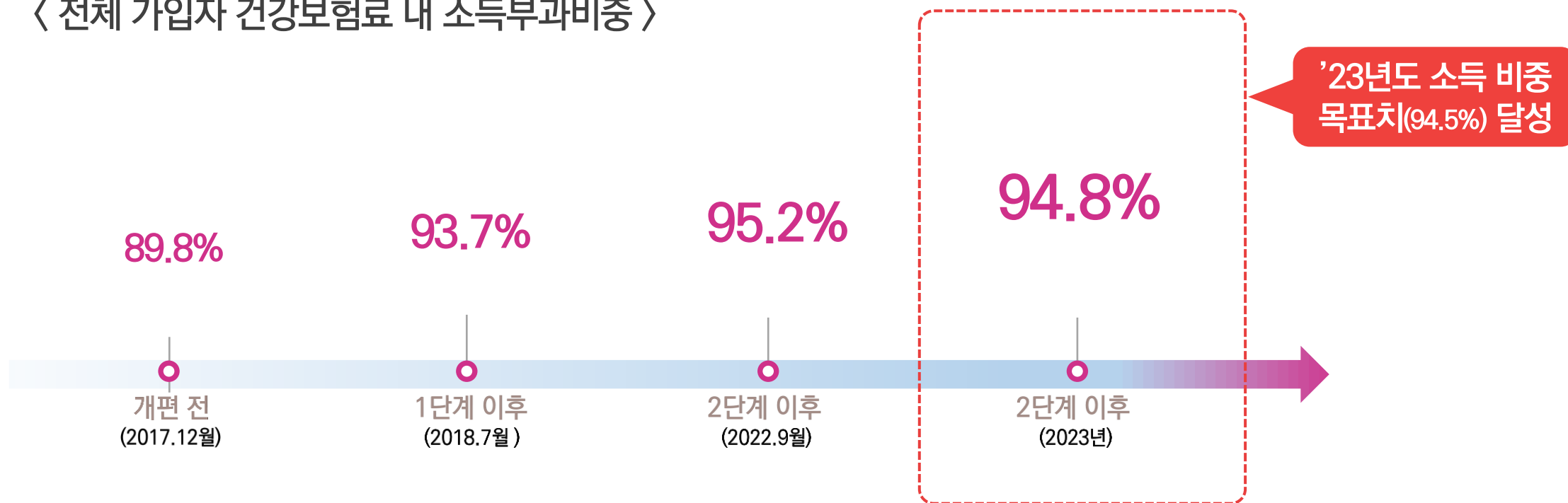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 확대 **9.7%**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성과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추진을 통해 2023년도 소득비중 목표치(94.5%) 달성

〈 전체 가입자 건강보험료 내 소득부과비중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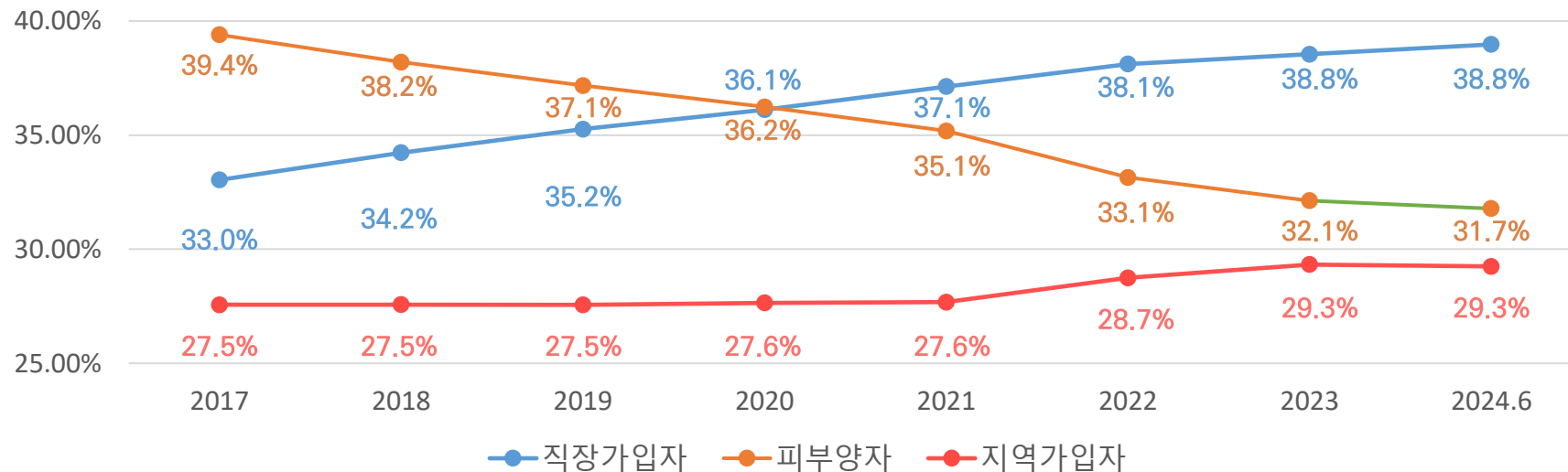
구 분		개편 전	1단계('18.7월)	2단계('22.9월)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추진('24.2월)
지 역	공 통	연금·근로소득평가율 20%	연금·근로소득평가율 30%	연금·근로소득평가율 50%	
	소 득	평가소득 적용(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소득등급표 75등급(500만원~4억9,900만원)	평가소득 폐지 소득등급표 97급(100만 원~11억4,000만 원)	소득등급표 폐지, 소득정률제 도입	
	재 산	재산공제 없음	재산공제 도입(과표 500~1,200만 원)	재산공제 확대(과표 5,000만 원)	재산공제 확대(과표 10,000만 원)
	자 동 차	모든 15년 이하 차량 보험료 적용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고가 자동차만 부과	자동차 부과 폐지
	최 저	최저보험료 관련 별도 규정 없음	최저보험료 도입(연100만 원 이하)	최저보험료 도입(연336만 원 이하)	
직 장		보수외 소득기준 7.2천만원 초과	보수외소득기준 3.4천만 원 초과	보수외소득기준 2천만 원 초과	
피 부 양 자	소 득	합산 최대 1.2억 원	합산 최대 3.4천만 원	합산 최대 2천만 원	
	재 산	재산과표 9억 원	재산과표 3.4억 원	재산과표 3.4억 원	
	부 양	형제·자매 포함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단, 기준 충족* 시 인정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단, 기준 충족* 시 인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과체계 개편 추진경과에 따른 가입자별 변동 현황

전체 가입자는 51백만 명 수준을 유지,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으로 직장·지역가입자 비중은 증가하고 피부양자 비중은 매년 감소함

● 가입자 비중: 직장가입자(17년) 33.0% → (24.6월) 38.8% / 지역가입자(17년) 27.5% → (24.6월) 29.3% / 피부양자(17년) 39.4% → (24.6월) 31.7%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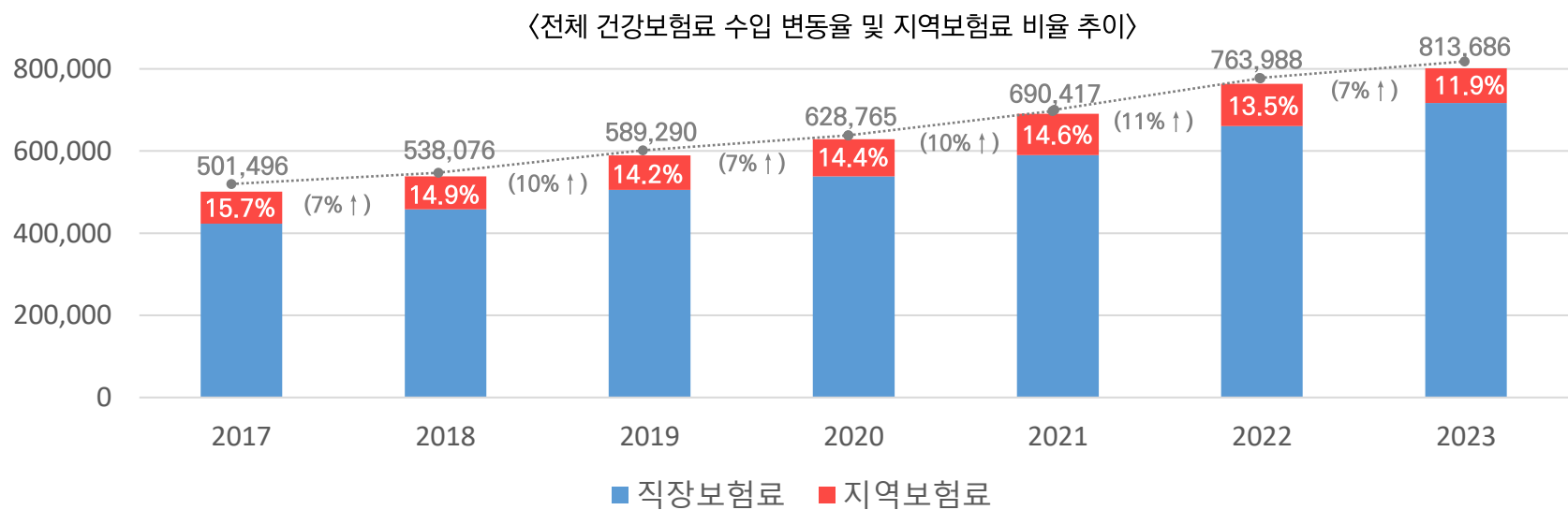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건강보험 가입자	50,941 (100%)	51,072 (100%)	51,391 (100%)	51,345 (100%)	51,412 (100%)	51,410 (100%)	51,453 (100%)	51,425 (100%)
직장가입자	16,830 (33.04%)	17,480 (34.23%)	18,123 (35.26%)	18,543 (36.11%)	19,090 (37.13%)	19,594 (38.11%)	19,834 (38.87%)	20,042 (38.97%)
피부양자	20,069 (39.40%)	19,510 (38.20%)	19,104 (37.17%)	18,607 (36.24%)	18,090 (35.19%)	17,039 (33.14%)	16,531 (32.13%)	16,343 (31.78%)
(부양률, 명)	1.19	1.12	1.05	1.00	0.95	0.87	0.83	0.82
지역가입자	14,042 (27.57%)	14,082 (27.57%)	14,164 (27.56%)	14,195 (27.65%)	14,232 (27.68%)	14,777 (28.74%)	15,089 (29.33%)	15,040 (29.25%)

※ 2017~2023년은 연도 말 기준이며, 2024년은 매월 말 기준임

부과체계 개편 추진경과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현황

전체 보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평균 8% 상승)이며, 지역보험료 비율은 점차 감소('17년, 15.7% → '23년, 11.9%)하는 추세이며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재산보험료 일괄 5천만원 공제 등)으로 지역보험료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14.6%('21년)→ 13.5%('22년)→ 1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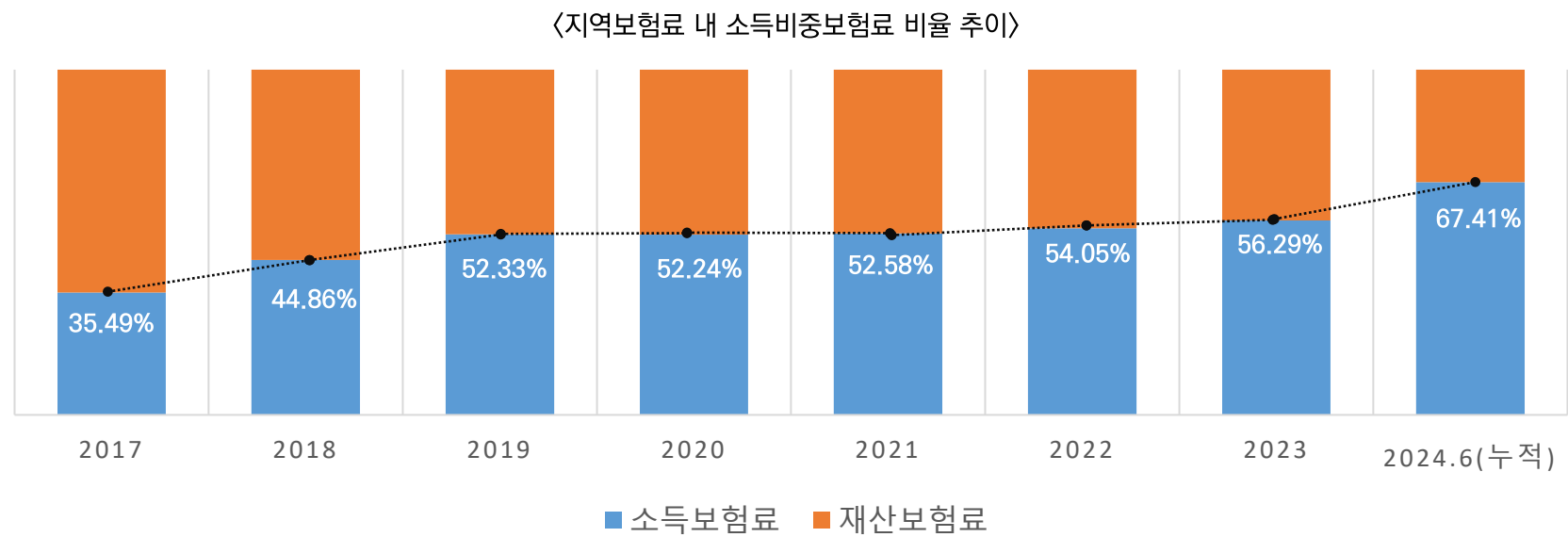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보험료 수입	501,496 (100%)	538,076 (100%)	589,290 (100%)	628,765 (100%)	690,417 (100%)	763,988 (100%)	813,686 (100%)
지역보험료	78,600 (15.67%)	80,063 (14.88%)	83,443 (14.16%)	90,135 (14.34%)	100,449 (14.55%)	103,267 (13.52%)	96,881 (11.91%)
직장보험료	422,896 (84.33%)	458,013 (85.12%)	505,847 (85.84%)	538,630 (85.66%)	589,968 (85.45%)	660,721 (86.48%)	716,805 (88.08%)

부과체계 개편 추진경과에 따른 지역보험료 소득비율(%)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으로 지역보험료 내 소득비중 보험료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24.2월 재산공제 확대(5천→1억)로 소득비중이 큰 폭으로 상향됨

-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으로 소득비율 11.43%p 상승(44.86%('18년)→56.29%('23년) / 재산공제 확대로 소득비율 11.12%p 상승(56.29%('23년)→67.41%('24.6월)



(단위: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누적)
소득비율	35.49%	44.86%	52.33%	52.24%	52.58%	54.05%	56.29%	67.41%
지역 보험료 수입	79,682	76,075	83,616	91,506	100,202	100,858	97,366	47,738
소득비중보험료	28,280	34,130	43,758	47,800	52,690	54,517	54,800	32,183
재산비중보험료	51,402	41,945	39,858	43,706	47,512	46,341	42,566	15,55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향후과제?

피부양자 무임승차 개선 보험료부과소득 확대

직장-지역 부과체계 일원화

보수외 소득기준 하향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산보험료 공제확대

보험료부과단위 개선

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
최저보험료 현실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략 3가지

피부양자 무보험료 부과 소득 확대
직장-지역 부과체계 일원화
보수외 소득기준 하향 경감제도 정비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제확대
보험료 부과단위 개선
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
최저보험료 현실화



부과체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



합리적
개선을 통한
수용성 제고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ank You

